

인터넷 매체 관련 언론조정 · 중재 실무개선방안

이 상 협

(네이버 정책실 차장)

I. 인터넷뉴스서비스 실무 관점에서 바라본 개선 방향

네이버 등의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각 포털에서 제공 또는 매개하는 뉴스서비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대한 신속하게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민해 왔습니다.

뉴스는 온라인 공간에서 유통되는 일반 정보와 달리 언론사들이 저작권을 가진 특수한 유형의 콘텐츠로, 정통방법에 의한 임시조치 등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돼 왔습니다.

이 때문에 명백한 허위 사실이 포함돼 있어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다른 사람의 법익을 해치는 기사가 있더라도 당사자가 이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마땅한 절차가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네이버를 포함한 인터넷 포털사들은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뉴스서비스 제공에 따른 사회적 책임을 이행한다는 차원에서, 온라인상에 유통되는 뉴스 콘텐츠에 대해서도 언론중재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각계에 요청해 왔고, 작년에 법 개정이 이뤄진 것입니다.

II.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지위의 현실적 한계

이와 같이, 언론법에서도 포털은 언론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으며 신문법 제 10조에서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독자적으로 생산하지 아니한 기사의 제목·내용 등을 수정하려는 경우 해당 기사를 공급한 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앞서 주제 발표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는 언론사의 기사를 수정, 삭제할 수 있는 현실적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관련법으로 보나, 현실적으로 보나 언론보도의 피해자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에게 정정·반론·추후 보도를 청구하거나 조정을 요청하더라도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인 포털은 직접 이에 판단하거나 조치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행 언론법은 언론사와 피해자 간 합의가 성립되지 않은 경우, 즉 언론사가 정정보도나 반론보도 등의 진행 여부나 그 내용에 대해 다투는 경우에도 1)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독자적으로 정정·반론·추후보도를 하거나 또는 2) 언론위 직권조정결정으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정정보도 등을 하도록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실무에 그대로 적용할 경우, 신문법과 언론법 간 충돌이 생기거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이 있어 보입니다.

포털은 언론사와 언론위 간 협의된 내용에 따라 언론사가 기사를 수정하거나 별도 정정기사로 입력한 것을 서비스에 그대로 반영할 뿐입니다. 즉, 포털은 언론사에서 정정한 기사를 다시 ‘유통’할 책임을 지는 것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Ⅲ. ‘알림 표시’에 관한 인터넷뉴스서비스 실무적 관점

알림 표시 위치는 작년에 포털사-문화부 간 협의하여 진행된 사항입니다. 특히 언론법에는 피해자 요청이 있거나, 언론사 통지가 있는 경우에 알림 표시를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언론위를 통한 통지의 경우에는 법상 의무 대상이 아님에도 포털사들은 모두 성실히 협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알림표시의 위치가 어디냐의 문제만을 놓고 포털사들이 알림표시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리는 것은 아쉽습니다.

또한 실무상에서는 언론사와 계약상 기사제목과 기사 본문 영역을 합쳐서 언론사 관리 영역인 “기사”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사제목과 본문 사이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가 임의로 구체적인 내용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당사에서 서비스되는 “전체” 언론사의 양해 및 그에 따른 계약 변경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정정·반론·추후 보도에 대한 표시를 해당 언론사가 직접 반영하여 그대로 전송해 주는 것도 해결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에서 기사를 수정 전송하면, 포털에는 자동적으로 노출되는

구조인 바, 피해자 구제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포털마다 뉴스기사 제공 상황이 다르므로 알림 표시는 포털 자율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그러한 방향으로 문화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IV. 포털의 심리 출석과 관련된 개선 방안

심리 진행에 있어서 포털은 말 그대로 언중위 조정에 형식적으로 출석을 하고 “양자 간 결정된 사항 대로 포털에 노출한다”는 취지의 합의만을 하고 돌아올 뿐입니다. 따라서 법 개정 또는 심리 프로세스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고 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포털과 언론사의 관계상 언론사가 기사노출 및 삭제에 대한 전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털이 언론사에 특정 기사를 송고해 달라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언론사가 결정하여 ‘협조’할 사항에 불과합니다. 즉, 포털이 의지가 있다고 하여 기사가 송고되는 것은 아니며, 포털이 언론사에 강제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심리 출석에 대한 사업자 부담이 완화됐다고 하지만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서는 상당히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으므로 해당 프로세스가 개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현재 중재부에서 실무적으로 운영하는 ‘심리불출석 방안’은 각 중재부마다 입장이 달라 실무상의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합니다. 손해배상 사건의 경우, 출석의무 부담의 간소화가 어려울 수 있으나 정정보도 등의 사건의 경우 충분히 출석 의무를 면제하는 방향으로 간소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정정보도 등의 포털 노출은 언중위에서 언론사 결정문에 “원조정기사가 전송된 포털사에 정정기사 등을 전송한다”는 내용을 넣는 것으로 간단히 해결할 수 있으므로, 언론사 사건이 완전히 종료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포털사 사건을 진행하고, 포털사에 대한 결정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매뉴얼화하여 처리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1) 언론사와 신청인 간 합의가 이뤄지는 경우

1안 - 취 하

언론사와 신청인 간 합의가 이뤄지면, 언론사의 결정문에 “원조정기사가 전송된 포털사에 정정기사

등을 전송한다”는 내용의 결정문을 넣고 포털사 사건은 신청인 동의 하에 취하하는 방식입니다. 피해자 구제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포털사에 잔여 법률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는 가장 바람직한 안이라고 판단됩니다.

2안 - 직권 조정

포털사 사건은 지난 1년반 정도의 운영 통해 많은 부분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이를 참고하여 언중위에서 직권 조정하는 방식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현재 실무적으로도 널리 사용되고 있으나, 드물게 기사 게재 영역의 차이를 반영하지 않은 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포털사마다 이행 방식에 차이가 있어 이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바 세심한 결정이 요구됩니다.

2) 해당 언론사와 신청인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언론사가 신청인과 다투고 있는 상태에서 포털이 독자적으로 정정보도를 실어야 한다는 식으로 결정하는 것은 언론의 자유를 크게 침해할 우려가 있으며, 언론사와 포털 간 불필요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언론사와 신청인 간 조정이 불성립 된다면 포털도 그에 따라 불성립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 또한 포털은 출석하지 않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V. 포털마다 상이한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의 특성에 대한 이해 필요

네이버의 경우는 2009년 1월 뉴스캐스트 개편 이후에 메인 페이지에서 편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이버 뉴스 제휴 언론사들이 직접 기사를 편집하고 아웃링크를 통해 언론사 사이트에서 기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한 것입니다. 따라서 다른 인터넷뉴스서비스와 다른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뉴스캐스트는 언론사에서 직접 편집, 운영하는 공간으로 1차 책임은 언론사에 있지만 네이버 플랫폼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기에 플랫폼 제공자로서 이용자들에게 건강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야 할 의무와 책임 또한 가지고 있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뉴스캐스트 기사 제목의 선정성을 지적하면서 포털 사이트 편집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지적하며 ‘포털 뉴스 편집 교육 계획’을 밝히는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네이버의 메인 페이지에 노출되는 기사들이 언론사에서 편집하여 제공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네이버에서 편집하는 것으로 잘못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봤을 때 좀 더 실제 실무 상황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그 이후에 ‘인터넷뉴스서비스’에서의 의무 등 프로세스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포털이 뉴스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시작한지 어언 10년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전향적인 방향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법률상으로 유지하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포털사들이 피해자를 발생시키지 않기 위해 자발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수 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포털을 동반자로서 인식할 필요성이 있고 해결책을 같이 모색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